

농 촌 진 흥 청

주 의 요 구

제 목 연구활동 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

기 관 명 부산광역시

내 용

부산광역시 ○○○○센터에서는 지역농업 현안의 해결 및 새로운 작목의 도입과 발전 가능성 확보와 과제연구를 통한 지도공무원의 과학적 분석 및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하여 “○○○○○ 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 지원사업”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정산 하였다.

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)」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(지방)단위 행사참석 실비, 산업시찰,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행사실비보상금(301-09) 과목에서 지급하며, 행사실비보상금(301-09)은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도 부산광역시 ○○○○센터에서는 ○○○○○○ 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 지원사업(사업비 17,100천원)을 추진하면서,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는 현장컨설팅 농업인 견학 실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로 지급하여야 했으나, 농업인 6명에게 개인별 84,000원을 책정하여 504,000원을 현금으로

지급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

[주의] 향후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을 준수하시고,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